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507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함진규 · 정태옥 · 박인숙
한선교 · 경대수 · 박찬우
성일종 · 강효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3조제2호다목에서 “「기능대학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기능대학법」은 2010년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과 통합되면서 현재는 폐지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따라서 “「기능대학법」”을 “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”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3조제2호다목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다목 중 “「기능대학법」 제2조제1호에”를 “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 -----.
1. · 1의2. (생 략)	1. · 1의2. (현행과 같음)
2. “고등교육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.	2. ----- -----.
가. · 나. (생 략)	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다. 「기능대학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능대학	다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----- -----
3. ~ 13. (생 략)	3. ~ 13. (생 략)